

제2회 스포츠센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변경 공고

2018년 제2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채용분야	직무내용	인원	채용예정직급	근무기간
스포츠센터 시설관리원	스포츠센터 종합 안내소 매표업무	1명	시설관리원 (시간선택제)	최초임용일 ~ 2019. 2. 28.

○ 근무조건

- 채용기간 : 최초임용일 ~ 2019. 2. 28.
- 근무시간

구 분	근무시간	비 고
변경전	주5일 20시간(1일 4시간), 토요일(격주) 4시간	
변경후	주5일 20시간(1일 4시간), 토요일(격주) 8시간	

구 분	근무시간	새벽근무	오후근무	정상근무	비 고
시간선택제	주20시간	10:00~15:00	17:00~22:00	14:00~18:00	

※ 새벽, 오후, 정상근무는 1주일에 한번씩 로테이션 근무

- 근무요일 : 월, 화, 수, 목, 금, 토(격주)
- 보수 및 수당

구 분	보수 및 수당	비 고
변경전	월 850,000원 상당(급양비 별도임)	
변경후	월 900,000원 상당(급양비 별도임)	

2. 자격요건

○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컴퓨터관련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공통요건

- 가. 결격사유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다. 거주지 : 제한 없음.

3.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9. 4.(화) ~ 9. 10.(월) 09:00 ~ 18:00 / 5일간
- 접수처 :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의정부시 장곡로 10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8. 9. 12.(수) 14:00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회의실	2018. 9. 13.(목)

○ 시험방법 : 면접심사

- 평가내용 :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 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발표 :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임용후보자 등록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임용자격이 부여됨
- ※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 가. 입사지원서 1부.
- 나. 자기소개서 1부.
- 다. 자격증 사본 1부.

5 기타사항

- 가.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채용을 취소함.
- 나.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으로 불이익 발생 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828-6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